

부산지방법원 2024. 4. 24 선고 2023가단30694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명상

변 론 종 결 2024. 3. 20.

판 결 선 고 2024. 4. 24.

## 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1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1. 3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8. 4. 3.경 경주시 C, D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, 2018. 4. 11. 위 2개 필지 및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나. 그 후 피고와 E 사이에 2021. 7. 20.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55,000,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. 그에 따라 E는 2021. 8. 20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 명의 부산은행 계좌(이하 '이 사건 계좌'라 한다)에 송금하였다. 구체적으로 E는 이 사건 계좌에 2021. 7. 20. 계약금 35,000,000원을, 2022. 1. 5. 잔금 105,410,822원을 각 송금하였다(이하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'이 사건 매매대금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7호증,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,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1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3. 1. 3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3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주장

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실제로 처분한 사람은 피고의 형 F이고,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계좌의 명의를

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므로,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, 피고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.

#### 나. 판단

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(을 제5호증)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입금된 다음날인 2021. 7. 21. 위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34,000,000원이 출금된 사실,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입금된 다음날인 2022. 1. 6. 71,648,965원, 2022. 1. 11. 20,000,000원, 2022. 1. 18. 13,770,000원이 각각 이 사건 계좌에서 ‘대체’ 명목으로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2022. 1. 6.부터 2022. 1. 18.까지 ‘대체’ 명목으로 출금된 합계 105,418,965원이 F과 F의 모친 G 및 F의 배우자 H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나, F이 작성한 거래내역 정리문서(을 제6호증)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.

결국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잔금의 출금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대부분이 입금 다음날 F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 지정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실제로 F이 사용하는 계좌였다거나, 이 사건 매매대금이 F에게 귀속되어 피고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유신